

작성요령

1. 관리번호와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이 신고서는 아래 순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가. ①기본사항
 - 나. ②소득금액계산 및 ⑩이월결손금명세
 - 다. ③소득공제 및 ⑧조세감면규제법상소득공제
 - 라. ④세액계산 및 ⑦세액공제
 - 마. ⑤기납부세액 및 ⑫원천납부세액명세
 - 바. ⑥차감세액
 - 사. ⑨국세환급금계좌신고
 - 아. ⑩세무대리인
 - 자. 신고자 성명 기입과 서명 또는 날인
3. ③소득공제 ⑥란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는 ③조세감면규제법상소득공제 ⑫란의 합계액을 이기합니다.
4. ④세액계산의 세액공제계 ⑮란은 ⑦세액공제 ⑳란의 합계액을 이기합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세액공제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5. ④세액계산의 가산세 ㉑란은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기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가산세 포함).
6.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국세환급금계좌신고 ㉒~㉔란에 기입합니다.
이 경우 정기성 예금 및 적금은 수시인출이 불가능 하오니 인출이 가능한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금계좌개설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8. 세무대리인이 기장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⑩란을 기재하되 ㉕성명란 및 ㉖관리번호란은 납세자의 신고 및 조정 의뢰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성명 및 관리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동사무소·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이 신고 및 조정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합동사무소 및 법인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9. 구비서류란중 기타서류 : 당해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 율 표(1997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10	0	4,000만원초과	30	500만원
1,000만원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초과	40	1,300만원

관리번호	-	(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특별(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호	통	반				
④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20.간편장부 30.표준율				⑥ 신고구분										
⑤ 규모별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10.정기 신고	수정신고				30.기 정정 청구	40.기 한후 신고				
⑦ 주소지전화번호						⑧ 사업장전화번호					21.서면분석	22.기타			
소득구분		⑩		30.부동산 40.사업		⑤ 기 납 부 세 액	중간예납액	⑧1							
							토지등매매 차익예정 납세조합징수 수시부과 원천징수 계	⑧2 ⑧3 ⑧4 ⑧5 ⑧8 ⑨1							
② 소득 금액 계 산	사업장소재지		⑩3				⑥ 차 감 세 액	환급세액	③3						
	상호		⑩4					차감납부할세액	③4						
	사업자등록번호		⑩5					분납할세액	③5						
	주업종 표준소득률 코드		⑩7					자진납부세액	③6						
	총수입금액		⑩8												
필요경비		⑩9													
이월결손금		⑩10													
종합소득금액(⑩8-⑩9-⑩10)		⑩12													
③ 소득 공 제 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㉒		⑥1				⑦ 세 액 공 제	㉒ 번호	㉒ 구분(명칭)	㉒ 코드	㉒ 공제세액				
	중 합 소 득 공 제	기본공제(명)		⑥2				1							
		추가공제(명)		⑥3				2							
		표준공제		⑦2				3							
	계		⑦3					계 (㉒=㉒6)							
소득공제계 (⑥1+⑦3)		⑦4				⑧ 조 세 특 례 제 한 제	㉒ 번호	㉒ 구분(명칭)	㉒ 코드	㉒ 금액					
과세표준 (⑩12-⑦4)		②3					1								
기본세율		②4				2									
산출세액		②5				계 (㉒=⑥1)									
세액공제계(②4)		②6				⑨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결정세액(②5-②6)		②8				예입처	④1	은행				본·지점			
가산세		②9				예금종류	④2					예금			
총결정세액(②8+②9)		③1				계좌번호	④3								
⑩ 세 무 대 리 인	성명	④4	전화번호		④5	조정번호		④7							
	관리번호	④6	-				대리구분	④8	1. 기장 및 조정 2. 조정 3.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합니다.										접수(영수) 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각 1부)		1. 소득공제신고서				2. 기타서류(제2쪽 참조)									

㉠ 이 월 결 손 금 명 세								
㉠ 구분	㉡ 일련 번호	㉢ 과세 기간	㉣ 이월결손 금발생액	공 제 액				㉥ 잔 액
				㉦ 기공제액	㉧ 당기공제액	㉨ 보 전	㉩ 소 멸	
부동산 임 대 소 득 (30)								
	계							
사 업 소 득 (40)								
	계							
작성요령: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란에 기입합니다.								
㉡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 소득귀속연월	㉧ 소득구분	㉨ 상호 또는 법인명			㉩ 수 입 금 액	㉪ 소 득 세	비 고	
계								
작성요령: 1. 소득귀속연월(㉦):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귀속연월을 기입합니다. (예: 1999년 6월이면 9906) 2. 소득구분(㉧): “사업소득”을 기입합니다. 3. 상호 또는 법인명(㉨): 지급처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4.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면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